

## 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29호

**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**

서초구 방배동 913-24 일대 방배8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4월 11일  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## 1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

|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| 면적(㎡)  | 토지등<br>소유자 | 추진위원장 | 승인일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방배8구역<br>주택재건축정비사업<br>조합설립추진위원회 | 방배동<br>913-24 | 19,953 | 145명       | 김흥일   | 2006. 8. 8. |

## 2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7. 4. 11.

## 3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사유

가. 서울시 고시 제2017-112호(2017.3.30.)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 
지정 직권 해제

나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  
예정구역지정 해제 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
## 4. 문의사항 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32)